

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(제117조의2관련)

1. 공통사항(매매업·정비업·폐차업)

가. 사업자

- (1) 고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종사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(3)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이어야 한다.
- (4)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, 관련법령을 준수한 자이어야 한다.
- (5) 사업자는 수수료·요금 또는 가액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자이어야 한다.

나. 종사원

- (1)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종사원증을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.
- (2)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과 상담하여야 한다.
- (3) 고객에게 호객행위와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2.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

가. 매매업

- (1) 사무실과 전시장 주변환경은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있게 관리되어야 한다.
- (2) 사무실의 구조와 면적은 이용하기에 편리하여야 한다.
- (3) 상품용 차량은 전시장에 주차하여야 한다.

나. 정비업

- (1)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·폐부동액·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- (2)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의 날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,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, 오·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- (3) 소음·진동규제 법령에 의한 소음·진동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(4) LPG연료사용자동차의 정비업자는 용기내부의 잔류가스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소장치, 가스누출감지기, 소화기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(5) 자동차의 정비용 부품은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의 품질인정표시를 받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다. 폐차업

- (1)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·폐부동액·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- (2) 작업장을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, 외부와 분리되도록 작업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한다.
- (3) 작업장 면적 중 300㎡ 이상의 옥내작업장을 갖추어야 한다.
- (4) LPG차량의 폐차를 위하여 용기내부의 잔류가스 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소장치, 가스누출감지기, 소화기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(5) 재활용 부품의 관리를 위하여 300㎡의 부품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.